

#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711
----------	-------

제출년월일 : 2021. 10.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 발생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 저소득 청년에 대한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5조)

## □ 개정조례안 : 붙임1

##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3

##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붙임4)

##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21. 9. 3. ~ 2021. 9. 13. (10일간)

##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5

- 방침결정문 : 붙임6

## < 불임 1 >

#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저소득 청년” 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은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소관 실·과		기획예산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기획예산과장 이 석 종
	담당·팀장 직위·성명	인구청년정책팀장 윤 혜 원
	담당자 성명·전화	이 정 환 (행정 3093)

< 불임 2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저소득 청년” 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p>
<p>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생 략)</p> <p>②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p>	<p>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 .</p> <p>----- .</p> <p>----- .</p> <p>----- .</p> <p>----- . 다만, 시장은 사회적 · 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 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p>
<u>〈신 설〉</u>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p>

#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8-711호
----------	---------

제안년월일 : 2021. 10. 21.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 수정이유

- 불필요 조문을 삭제하여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불필요 조문 삭제. (안 제5조제3항)

#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 **수정안**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  
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3항 중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청년에 한해”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생 략)  ②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다만, <u>시장은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u>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③ ----- ----- 청년에 한해 ----- ----- ----- ----- --.